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태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63

발의연월일: 2024. 7. 3.

발 의 자:김태년·송기헌·백혜련

진선미・김영배・허 영

서영석 • 박균택 • 이학영

조인철 · 홍기원 · 신영대

전용기 · 박희승 · 김영진

김 윤 • 권칠승 • 임호선

송재봉 • 김준형 • 복기왕

전현희 · 강준현 · 오세희

최기상 · 김한규 · 김동아

정태호 • 허종식 • 권향엽

안도걸 · 김성환 · 조승래

박지혜 · 김교흥 · 진성준

정일영 • 박홍근 • 박수혂

양부남 · 정준호 · 허성무

김성원 • 추미애 의원

(4491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」에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

시에 개정하려는 것임(안 별표 2 제72호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」(의안번호 제1362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 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에 제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2. 「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